

- 본 입찰공고는 **사회적기업(주) 다로리인**이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도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사회적기업(주) 다로리인)가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되며,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 청도군 재무관에게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주) 다로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도군 공고 제2026 - 31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민간입찰대행)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소규모마을활성화사업기반구축(시범마을)마을목공방설치공사				
개 찰 일 시	2026. 9. 11.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7. 21:00 ~ 2026. 9. 11. 10:00		
공사예정금액	200,000,000	기 초 금 액	200,000,000		
		추 정 가 격	181,818,182		
		부가가치세	18,181,818		
		관급자재대	-		
현 장 설 명	없 음	개 찰 장 소	청도군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경리팀 (054-37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	기획예산실 김동연	연락처	054-370-6032

※ 유찰시 재입찰 : 2026. 9. 11.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군 **기획예산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위 치 :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지내
- 공사내용 : 마을목공방 조성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청도군**에 있는 자

4.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3,468,132	2,624,829	1,679,306	344,902	4,629,501	0	0	12,746,670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2,624,829원), 연금보험료(3,468,13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44,902원), 퇴직공제부금비(1,679,306원)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 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4,629,501원)를 공사 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 계약 시, 보조사업자와 협의

가. 하도급 계약관련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협의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건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tel: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4-370-2042](tel: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청도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2026년 9월 7일

청도군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